

농지법 시행령, 시행규칙 입법예고

1. 지난해 12월 농지에서의 축사를 비롯한 축산물생산시설이 전용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요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,
2. 우리협회에서는 생산현장에서 축사의 농지진입이 용이하도록 농지법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)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정부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.
3. 이에 지난 4월 9일 농지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령(안)이 입법예고 되었으며,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알 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〈농지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〉

가. 개정이유

- 농지에서의 축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이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가능 하도록 농지의 정의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개정(2007.01.03 공포, 2007.07.04 시행)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
나. 주요내용

- 농지의 범위에 속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구체화
 - 농지정의에 '축사와 농림부령이 정하는 그 부속시설'로 정함으로써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 신축가능 (시행령)
 - 부속시설의 범위 (시행규칙)
 - 급여시설, 착유실, 위생시설, 가축분뇨처리시설, 농기계보관시설,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/관리/출하에 직접 필요한 시설
 -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
 - 당해 축사에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 (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)
-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추가 (시행령)
 - 시도지사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해제 가능

다.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신설(시행령)

- 농수산물의 가공/처리시설,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의 설치,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서 제외하여 농지내 설치 가능토록 조치함

라. 기타

- 개정안 원문
 - 농림부 홈페이지(www.maf.go.kr) : 법령정보/입법/행정 예고 112번

※ 문의처 : 협회 지도부 (02-588-7055~6)